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0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2.
3. 회 부 일 : 2025. 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함께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기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등을 위한 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 각국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¹⁾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국가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이란 총회와 중앙본부 그리고 하부조직을 말한다.</u>
<u><신설></u>	<u>제1조의3(조직) ① 총연맹은 서울 특별시에 중앙본부를 두고, 시·도에 지부를 두며, 시·군·구에 지회를 두고, 읍·면·동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② 총연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u>

1) 「한국자유총연맹 정관」 제3조(목적) 본 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 각국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③ 총연맹은 통일 준비 민주시민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
-----총연맹을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출연·보조 등) ① -----
-----총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총연맹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총연맹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총연맹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u><신 설></u>	<u>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①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의 규정(안 제1조의2)과 ②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규정(안 제1조의3)을 신설하고, ③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지급의 근거와, 개인·법인·단체의 재산 출연과 기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먼저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1조의2)의 경우 단체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의 구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한국자유총연맹과 그 성격이 유사한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 살기운동조직’과 ‘새마을운동조직’도 각각 근거법²⁾에 정의규정을 두

2) 참고자료

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비교해볼 때, 의결기관에 해당하는 ‘총회’를 정의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규정 신설(안 제1조의3)의 경우,

한국자유총연맹이 중앙본부, 지부, 지회, 위원회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명시하고, 필요시 해외 지부 및 지회와 통일 준비 민주시민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창달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부설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정관은 한국 자유총연맹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전국 17개 시·도 및 이북5도, 해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는 조직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체계를 중앙본부, 지부, 지회, 위원회 체계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법인의 소재지는 「민법」 제40조에 의해 정관에 기재할 사항

에 속하고,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정관에 본부, 하부조직, 소재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새마을운동조직도 관련 내용을 정관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과 같이 조직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향후 본부의 소재지 변경이나 하부조직 개편 등 실무상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지급과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안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과 「새마을조직 육성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지급 근거와 개인·법인·단체의 재산 출연·기부의 법적 근거³⁾를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법인·단체의 기부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제3조가 신설되더라도 「기부금품법」에 따른 별도의 모집 절차를 거쳐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도 같은 법에 근거하여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을 경우 기부금

3) 참고자료

품 모집·접수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338

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참고

유사입법 사례(국민운동3단체 현행법령 비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단체·조직의 정의, 사무소, 하부조직 등 관련		
= -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군·구 협의회 3. 읍·면·동 위원회	
국·공유재산 대부 등		
법률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법률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공유시설 무상사용의 내용·조건 및 기간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범위) ① 법 제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새마을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내에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출연·보조·기부 등		
법률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법률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 손실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요구)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5조(출연금의 지급 신청) 새마을운동조직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적립금의 관리)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다른 경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무부장관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조세 감면 등		
법률 제4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률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